##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한지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103 발의연월일: 2025. 3. 19.

발 의 자:한지아·고동진·박성훈

김 건 · 안상훈 · 백종헌

임이자·최수진·김소희

서범수 · 정성국 · 박정하

의원(12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정신질환의 예방, 상담, 조기발견,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 등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관한 근거를 두지 않고 있음.

이에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2조의2(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) ① 보건 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정신 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 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 및시장·군수·구청장,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시행과 연계되는 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  - ③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과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업무를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.
  - 1. 「주민등록법」 제28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정 보시스템

- 2.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
- 3. 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
- 4. 「건강검진기본법」 제3조제4호에 따른 건강검진자료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
- 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
-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.
-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u>&lt;신 설&gt;</u> | 제12조의2(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보시스템의 구축・운영 등) ①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증진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사업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여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 <u>.</u> |
|                    |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른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스템을 구축·운영하기 위하여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<u>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, 제</u> |
|                    | 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사업등의 시행과 연계되는 기관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의 장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있다.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에 따라야 한다.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③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서비스 정보시스템과 다음 각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호의 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. 이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          |

-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업무 를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.
- 1. 「주민등록법」 제28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정보시스템
- 2.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
- 3. 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

   권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8

   조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
- 4. 「건강검진기본법」 제3조제4 호에 따른 건강검진자료를 처리 하는 정보시스템
- 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정보시스템
-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관한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.
-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정 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의 구축・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.